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사무자동화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 8.24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64명(변동없음)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217명 → 1,236명(+19명)**

• 6급이하 : 1,129명 → 1,148명(+19명)

○ **기능직 : 284명 → 265명(△19명)**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이내	7%이내	26%이내	30%이내	25%이내	11%이상
조정			+1%	+1%		△2%
개정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5%이내	9%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4%이내	13%이내	19%이내	33%이내	31%이상
조정	+1%	+2%	+2%		△5%
개정	5%이내	15%이내	21%이내	33%이내	26%이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371호)

나.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10,943천원 정도

구분	인원	산 출 내 역
계		**310,943천원(연간소요액)**
일반직	12	**소계 : 258,738천원** 7급 → 6급 : (49,321-36,883)×3명 = 37,314천원 8급 → 6급 : (49,321-26,669)×5명 = 113,260천원 9급 → 6급 : (49,321-22,280)×4명 = 108,164천원
기능직	2	**소계 : 52,205천원** 8급 → 6급 : (49,321-26,669)×1명 = 22,652천원 10급 → 6급 : (49,321-21,024)×1명 = 28,297천원 ※기능직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 (일반)9급 : (22,280-21,024) = 1,256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1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5%이내	9%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이내	15%이내	21%이내	33%이내	26%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60%이내	40%이상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64	1,56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36	1,236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148	1,148					
별정직 계	27	27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7	27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65	26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0% 이내	25% 이내	11%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3% 이내	19% 이내	33% 이내	31% 이상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일반직	소 계	1,217	-					
	⋮							
	6급이하	1,129	-					
⋮								
기능직계		284						
⋮								

개 정 안

[별표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 이내	15% 이내	21 이내	33% 이내	26% 이상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일반직	소 계	1,236	-					
	⋮							
	6급이하	1,148	-					
⋮								
기능직계		265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8.22>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371호)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가. 전환기준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함(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 외에 별도정원 등의 수는 비포함)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치단체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